

제2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광 수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0일 각국의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체제를 반영하여 인류공동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